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발파암 소할¹⁴¹⁾ 반영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고속도로(주)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¹⁴²⁾하였고, ○○○○고속도로(주)에서는 2015. 3. 10. 강원도 ○○시 ○○로 000에 있는 ○○○○(주)(대표자 ○○○)와 ‘○○○○도시 진입을 위한 ○○○○ 건설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4,203,40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날 착공하여 2016. 11. 10.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속국도건설공사 표준 수량산출 기준」 Ⅱ.(공종별 기준) 1장.(토공사)에

141) 일정크기 이상의 암석에 대해 잘게 부수는 작업

142) 2013. 4. 22. 2공구 고속도로 접속구간 사업에 대해 원주시와 ○○○○고속도로(주) 협약 체결

- 전체 2.8km(1공구 2.2km, 2공구 0.6km) 중 1공구는 원주시에서 완료(2012. 2. 24.~2014. 8. 7.)하였고 2공구는 ○○○○ 도시 진입도로가 ○○○○고속도로(주)에서 시행중인 ‘○○○○간 민간투자사업’과 접속되는 관계로 접속구간(○○○○)의 설계·및 시공을 ○○○○고속도로(주)에 위·수탁 하였음(공사비 100% 지원)
- 책임 및 업무범위는 ① 본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부담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 ③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 등이며, ○○○○고속도로(주) 책임 및 업무 범위는 ① 설계, 책임감리, 시공관리 ② 설계 및 시공의 업체 선정 ③ 시공 민원 처리 등임

따르면 발파암 외부 반출시 일반발파 및 대규모발파에는 소할을 반영하고 진동 제어(소·중규모) 발파에는 소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시 진입을 위한 ○○○○ 건설공사’에서 외부 반출하는 발파암 중 진동제어(소·중규모) 발파암에는 소할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외부 반출 발파암 70,846m³¹⁴³⁾ 중 진동제어(소·중규모) 발파암 7,808m³에 소할을 반영하여 공사비 9,436,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 “발파암 소할 적용 현황”

(단위 : 원)

| 공 사 명 | 총 발파암(m ³) | 일반, 대규모 발파 | 진동제어 발파 (A) | 공사비 | | | |
|-------------------------|------------------------|------------|-------------|----------|-----------|-----------|------------------|
| | | | | I. 직접공사비 | | II. 제경비 | 계 (I + II) |
| | | | | 단가(B) | 금액(A×B) | | |
| ○○○○도시 진입을 위한 ○○○○ 건설공사 | 70,846 | 63,038 | 7,808 | 843 | 6,582,144 | 2,853,856 | 9,436,000 |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위 공사 발파암 중 진동제어(소·중규모) 발파암에 대하여 소할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9,436,00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143) 2015. 10 ~ 2016. 3. 압판정(10회) 결과에 따른 수량이며,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2016. 11 예정임